

2026년  
전국대학  
연구산학협력  
관리자협회

춘계세미나

2026.3.19.(목)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사례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내역 해설

한국사학진흥재단 회계조사부  
김나미 선임행정관

# Contents

## PART I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사업 소개

## PART II

산학협력단 회계실태점검 주요 오류 사례 안내

## PART III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 내역 해설

# PART I

##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산학협력단 회계실태점검 사업 소개

## 한국사학진흥재단 소개

### □ 대한민국 고등교육 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지원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미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혁신으로 미래교육 발전에 기여

비전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생 교육안정 지원, 지속가능 혁신성장 플랫폼

핵심  
가치

국민  
신뢰

미래  
선도

동반  
성장

가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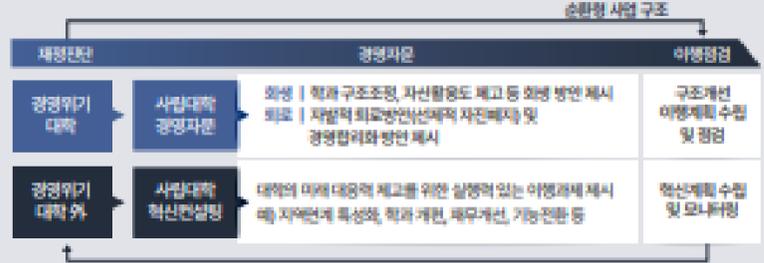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진단과 경영자문, 혁신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개선을 유도하며, 선제적이고 실행력 있는 구조개선 방안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합니다.

**지원 분야** 사립대학 재정진단, 사립대학 경영자문, 사립대학 혁신 컨설팅

**재정진단** 279 개교 **경영자문 및 혁신 컨설팅** 27 개교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체계도



## 폐교대학 종합관리

폐교대학 학사·인사 기록물의 보존·관리·증명서 발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특별편입학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청산 종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소에 기여합니다.

**지원 분야** 폐교대학 기록물관리 및 증명서 발급 지원, 특별편입학 및 청산종결 지원

**학사·인사DB** 642,884 명

**증명서 발급 건수** 48,465 건

**특별편입학 진학생 수** 6,177 명



## 교육행정 연수 지원

재단은 대학, 산학협력단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연수사업을 운영합니다. 또한, 대학 행정직원이 인사·노무, 법률, 세무분야 업무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연수센터 전문상담서비스를 운영하여 현장 실무의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 회계·예산, 인사·노무, 기획·평가, 세무, 감사, 일반행정

**연수 운영 횟수** 1,023 회

**전문상담 서비스** 교육연수센터



## 고등교육 재정 분석

재단은 고등교육 재정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국·공·사립대학의 재정·회계자료를 집계·분석하여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고등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재단의 '사립대학 재정통계'는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획득하며 높은 신뢰성과 통계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예·결산, 수익용 기본재산,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예·결산, 교육시설,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등

**평가실적** 10년 연속 최상위



## 교육환경개선 자금 용자 지원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교육 및 재정 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립학교에 낮은 이율로 교육환경개선 자금을 용자 지원합니다. AI, 첨단산업 인재양성 등 교육정책에 부응하여 고등교육 시설 및 환경 구축과 자체 구조개선 등 교육·재정여건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용자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 교육여건 개선, 재정여건 개선(수익용기본재산 확충 등), 폐교대학 청산지원(해산법인 청산 운영비 지원 등)

**용자 지원액** 3조 8,867억 원



## 행복기숙사 지원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공유지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저렴하고 편안한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81개 기숙사 사업에 총 1조 4,655억원 용자 지원하여, 전국에 총 42개 행복기숙사를 운영하며 대학생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 행복기숙사 건립 용자 지원, (연합형/사립형) 행복기숙사, 에듀21 기숙사, 기숙사형 청년주택, 글로벌 교류센터 운영

**수혜 학생 수** 53,236 명



## 사립대학 정보화 지원(U-ERP)

사립대학 표준 ERP 시스템(U-ERP)을 개발하고 보급·운영을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별도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비용 부담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강화된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백업) 관리를 통한 중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학의 행정 업무 정보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 예산회계, 경영정보, 인사급여, 전자결재, 통합포털 및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기관 수** 70 개

**U-ERP 시스템 배포 현황**

구분	기관	시스템			
		예산회계	인사급여	전자결재	합계
대학	33	31	3	12	46
전문대학	30	26	1	9	36
학교법인	5	4	1	2	7
대학원대학	3	3	2	3	8
합계	70	64	7	26	97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은 국립대학의 인사급여, 재정회계, 산학연구 등 행·재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응용SW 및 물적기반 운영·개선을 통해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맞춤형 교육, 전화상담센터 등 행·재정 업무 사용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 포털·공통,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업무관리

**이용기관 수** 37 개



##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 감리

### 사학기관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

- 사학기관의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준수, 해당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감사의 효과성 제고

###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여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 및 회계 투명성 강화
- 2022~2025년, 총 71개 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 지정

### 사학기관 예·결산 및 적립금 실태점검

-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 점검을 통해 회계 운영의 투명성, 책무성, 건전성 확보
- 적립금 실태점검(신규) : 사학기관 적립금 관리·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 국·공·사립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 추진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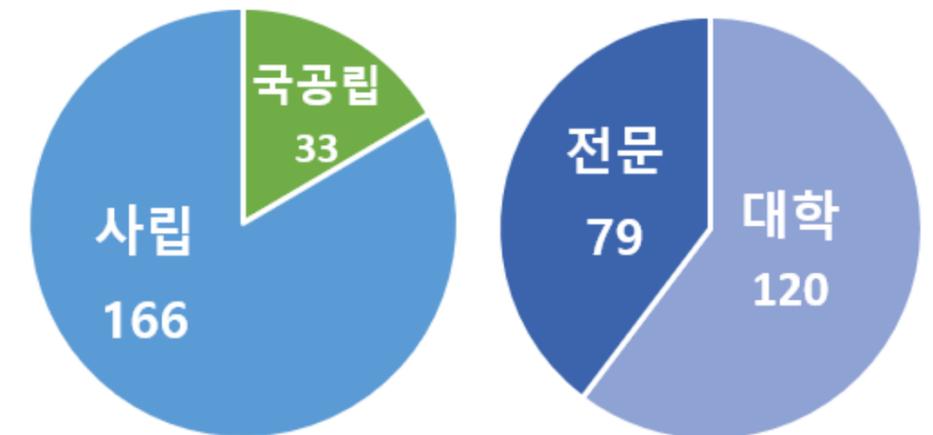
- ▣ 산학협력단의 규모 확대 및 업무 영역 다양화로 인한 현장의 회계처리 역량 강화 필요
- ▣ 산학협력단의 예·결산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피드백으로 산학협력단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

- ▣ 주관부처 :  
교육부 산학협력지원과
- ▣ 시행기관 :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  
회계조사부]

### 추진현황

- ▣ <2017년 ~ 2025년>  
총 199개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수행



##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대상교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 사학기관 회계감리 및 실태점검 대상교로 선정된 대학의 산학협력단 중 선정  
[2025년 부터 변경]
- 별도의 선정 기준에 따라 추가 대상교(국 · 공립 산학협력단 등) 선정



# PART II

## 산학협력단 회계실태점검 주요 오류 사례 안내

## 사례 1. 유형자산 취득 및 관리 부적정

- ▣ A 산학협력단은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면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재물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지 않음
- ▣ B 산학협력단은 재물조사 후 확인된 자산의 분실, 폐기 등의 변동 사항을 회계상 반영하지 않음
- ▣ C 산학협력단은 본교의 재물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내규상 2년 주기로 재물조사를 시행해야 하나 최근 3년간 재물조사를 수행한 이력이 없음

### [개선방향]

- ▣ 취득 이후 1년 이상 사용되는 물품의 취득 시, 자산계정으로 계상 후 재물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하여야 함
- ▣ 산학협력단은 2년 주기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계상에 적절히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취득금액과 재물목록이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사항**]

## 사례 2. (감가)상각비 관련 회계처리 오류

- D 산학협력단은 동일한 유형의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저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감가상각비 0,000천원이 과소계상됨
- E 산학협력단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용을, 해당 무형자산을 인식한 시점이 아닌 차기 회계연도부터 계상함에 따라 상각비 0,000천원이 과소계상되고 동 금액만큼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과대 계상됨

### [개선방향]

- 동일한 유형의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회계기간마다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함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사항(내용연수 관련) 준용 필요]
- [감가] 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인식하여야 하며 기중에 취득한 경우 월할 상각의 방식으로 적절히 계산하여야 함

## 사례 3. 내부거래 미제거

- F 산학협력단은 학교기업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진출한 00,000천원에 대해 결산시점에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합산 운영계산서상 수익 및 비용이 동 금액만큼 과대 계상됨
- G 산학협력단은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내부시험분석료 000,000천원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나, 결산 시점에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동 금액만큼 수익 및 비용이 과대 계상됨

### [개선방향]

- 결산시점 (합산) 재무제표의 작성 시, 내부거래를 적절히 제거하여 수익과 비용이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학교기업 수익 및 비용계정” 을 활용하여 합산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도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간의 내부거래는 제거한 값으로 기재하여야 함

## 사례 4.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 H 산학협력단은 본교로부터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보전 목적의 00,000천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회계처리함
- I 산학협력단은 전기, 수도 사용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000,000천원을 학교회계로 지급하면서 학교회계전출금 계정 과목으로 인식함

### [개선방향]

- 학교회계전출금 계정은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급하는 금액만을 기록하는 계정이므로, 대가성이 있거나, 비용 보전 성격의 지출분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인건비 보전의 경우 인건비 계정을 활용하고, 전기,수도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기관공통비용 등으로 지출

### [참고사항]

- 학교회계전출금 계정을 활용하여 현금의 전출 뿐 아니라, 자산의 전출(기계.집기 등의 이관 등) 또한 회계처리 가능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사항]

## 사례 5. 지식재산권 회계처리 오류

- J 산학협력단은 교비회계 예산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였음
- K 산학협력단은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대체하지 않았으며, 미등록 상태인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으로 계상하였음
- L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음
- M 산학협력단은 재무상태표상 지식재산권의 금액과 관련 명세서의 금액의 차이가 있음(부외자산 존재 확인)

### [개선방향]

- 지식재산권 취득비용은 지출 시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등록에 성공할 시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며 등록이 거절될 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 관련 계정으로 비용처리 하여야 함
- 재무상태표상 지식재산권의 총 금액과 지식재산권 관리대장의 합계는 같은 값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교비회계 예산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산학협력단에서 인식(교비회계의 타회계전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사례 6.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수당 지급 부적정

- N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수익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수익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함
- O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 시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연구책임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함
- P 산학협력단은 내규상 근거 없는 직원 수당 00,000천원을 지급하였음

### [개선방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를 재원으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의 수당 지급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 시 적절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연구책임자 뿐 아니라 참여 연구자 및 연구 지원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산학협력단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시에도 모두 관련 내규에 근거하여야 하며, 근거 없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사례 7. 학교회계 수익의 산학협력단 회계 인식

- Q 산학협력단은 대학 소유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등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및 임대료 수익을 교비회계가 아닌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인식함
- R 산학협력단은 재무상태표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외 자산(교비회계에 귀속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부터 발생한 설비자산 사용료 수익을 산학협력단의 수익으로 인식함

### [개선방향]

- 교비회계에 귀속된 건물 등을 산학협력단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추가적인 임대수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교비회계에서 인식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이를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와 산학협력단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후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교비회계에 귀속된 기계 및 설비 등을 활용하여 설비자산 사용료 수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교비회계의 수익으로 인식 및 관리 되어야 함

## 사례 8. 예산 초과 집행 및 관련 절차 미준수

- S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또는 예산의 전용 절차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함
- T 산학협력단은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함
- U 산학협력단은 예산서 및 부속서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 V 산학협력단은 정관상 예,결산 심의기구를 정하고 있지 않음

### [개선방향]

- 최종 추경전에 예산 집행내역의 점검을 통하여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 예산의 전용 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심의,확정된 예산서 및 부속서류는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 후 1년간 공개하여야 함
- 산학협력단은 정관에서 정한 예,결산 심의 기구를 거쳐 예산안 및 결산안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PART III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 ('25.7) 내역 해설

## 개정내역 한눈에 살펴보기

재물조사 실시주기  
명확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8조 제4항 신설  
- 전체 산학협력단,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 실시 필요

유·무형자산  
내용연수 일원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2조 제4항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따른 내용연수를 공통적으로 적용

계정과목 신설 및  
계정과목 해설  
개정  
(별표2, 별지4)

- 운영수익 계정과목 신설 : 기타산학협력수익 > 학교기업 수익  
- 운영비용 계정과목 신설 : 기타산학협력비 > 학교기업 비용, 인건비  
기타지원금사업비 > 인건비  
연구지원비 > 학생산재보험료  
- 학교회계전출금 해설 개정 : 대가성 없이 전출하는 금액 및 자산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신설

별지 제3호의 17서식  
- 연구실 안전·보안 자산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신설

## 재물조사 실시주기 명확화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8조제4항 신설

#### 제28조(자산의 평가기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산학협력단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0조(물품의 관리)

④ 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 회계처리 필요

재물조사 결과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손·망실 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회계처리까지 마쳐야 함을 유의

## 유·무형자산 내용연수 일원화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2조제4항 신설

#### 제32조(감가상각 등)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별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  
령」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내용연수를 의미**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 차량, 공구, 기계기구,  
집기비품 : **5년**
- 선박 및 항공기 : **12년**
- 구축물 : **20년**
- 건물 : **40년**

※ 적용가능한 내용연수에 하한 ~ 상한이  
있으며, 신기술개발목적 시험연구용 자산  
의 경우 별도의 내용연수 준용 가능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 **5년**
- 특허권 : **7년**
- ※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열거  
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 :  
기본 내용연수 **5년** [하한~  
상한, 4~6년 적용]

## 신설 계정과목 - 학교기업 수익 및 비용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 합산재무제표 작성시 활용가능한 학교기업 관련 계정과목 신설

[관)-(항)-(목)

I. 산학협력수익 - 기타산학  
협력수익 - 학교기업 수익  
(해설 : 학교기업의 수익총액)

I. 산학협력비 - 기타산학협력비  
- 학교기업 비용  
(해설 : 학교기업의 비용총액)

### 합산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

- 1) 학교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총계는 “학교기업 수익” 계정에, 비용의 총계 (당기운영 차익 제외)는 “학교기업 비용” 계정에 기재
- 2) 학교기업을 2개 이상 운영중인 산학협력단의 경우, 학교기업별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합산한 값으로 기재
- 3)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간의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제거 후 기재
- 4) 필요한 경우, 특정 수익 및 비용 등은 관련 계정으로 합산 가능

## 신설 계정과목 - 인건비 계정 신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 인건비 계정 2종 신설

[관]-[항]-[목]

I. 산학협력비 - 기타산학협력비  
- 인건비

II. 지원금사업비 - 기타지원금사  
업비- 인건비

[해설 : 기타산학협력(기타 지원  
금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

### 계정과목 분리 취지

- 1) 지자체 위탁사업 등의 수익 및 비용처리시, 위.수탁 협약 계약에 따라 수탁기관인 산학협력단이 수탁사업의 관리의무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의 수익 및 지출에 대하여 검토 등 관리 절차 없이 산학협력단 재무제표에 합산하는 사례 다수 확인
- 2) 기타지원금사업비 등을 집행할 시,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을 검토 하고 인건비와 그 외 지출 등으로 적절히 구분하여 계상하며, 회계 처리별 적요 등을 산학협력단 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신설 계정과목 - 학생산재보험료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 학생산재보험료 계정과목 신설

[관]-[항]-[목]

Ⅲ. 간접비사업비 - 연구지원비- 학생산재보험료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  
연구자의 보험료)

※ 기존에 기관공통비용 등으로 처리하던 학생산재  
보험료 계정을 신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일치되도록 개정

## 학교회계 전출금 계정과목 해설 변경

변경내용

- ▣ 개정 전 학교회계전출금 해설 : ~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
- ▣ 개정 후 학교회계전출금 해설 : ~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 및 전출하는 자산**
- ▶ 산학협력단에서 대학회계로 전출 시 현금 뿐  
아니라 현물의 전출도 가능함을 명시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사항 [2023. 5. 31] 반영

##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1종 신설

### 연구실 안전·보안 자산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별지 제3호의17서식]

#### 연구실 안전·보안 자산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유형자산>

(단위 : 원)

과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당기감가상각비	비고
합계								

<무형자산>

(단위 : 원)

과목	취득원가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당기상각비	비고
합계							

### 명세서 작성방법

- 1] 연구실 안전, 연구 보안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유·무형자산·장비에 대하여 취득 원가 및 (감가)상각 내역을 기재 [취득 시점부터 구분하여 자산으로 등록 후 관리 필요]**
- 2] 당기 이전 취득 분 중, 재물목록에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본 명세서에 합산하여 기재 가능 [단, 당기 감가상각비가 있는 자산에 한함]**
- 3] 기존에 있던 유·무형 자산 명세서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연구실 안전·보안 자산 포함]**

# (참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관련 법령, 해설 및 문의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www.law.go.kr](http://www.law.go.kr)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산학협력 길라잡이 I  
1편 : 산학협력단 업무내용 및 부속

산학협력 길라잡이 II  
2편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고등교육 재정정보 종합관리기관  
대학재정회계센터  
KASFO**

센터소개    고객마당    재정분석 간행물

맞춤형 온라인 상담

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기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 (참고)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및 대학재정회계센터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간행물  
▶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사례집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대학재정회계센터 ▶ 고객마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